

# 상수원관리규칙

상수원관리규칙중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1994년 9월 24일

국무총리 이 영 덕

상수원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중 “자연환경보전 지역·도시지역·유보지역외의 지역인 경우에 한한다”를 “준도시지역·농림지역·준농림지역으로서 10제곱킬로미터이상인 경우에 한한다”로 한다.

제11조 본문중 “영 제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로 한다.

제11조제1호나목중 “오수·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을 “대기·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로 한다.

제11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생활기반시설

### 가. 농가주택의 신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신축하는 경우로서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농가주택(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33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으로 거주하여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무주택자를 포함한다)로서 혼인으로 인하여 세대주가 된 자가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의 부속건축물.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농가주택의 신축은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 나. 주택의 증축

(1)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00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33제곱미터이하

(2) 보호구역지정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보호구역지정 당시 당해 구역안에 거주하고 있던 자로서 생업 기타의 사유로 3년이내의 기간동안 보호구역 밖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가 주택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32제곱미터이하(지하층이 농가용 부대창고인 경우에는 기존의 지하층 면적을 포함하여 132제곱미터이하로 하되, 연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및 기존의 부속 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66제곱미터이하. 이 경우 지하층이 없는 주택의 증축은 기존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54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11조제3호나목중 “200제곱미터이하”를 “300제곱미터이하”로 한다.

제11조제3호다목중 “66제곱미터이하”를 “당해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로 하고, 동목 단서를 삭제한다.

제11조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퇴비사 및 발효퇴비장: 1가구 당 기준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200제곱미터이하

제11조제3호바목중 “임시가설건축물”을 “기자재보관창고”로 한다.

제11조제3호에 사목·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관리용건축물: 과수원·유실수단지·원예단지에 설치하되, 생산에 직접 공여되는 토지면적의 1천분의 10이하로서 기존 관리용건축물의 면적을 포함하여 66제곱미터이하

아. 온실: 수경재배·시설원예등 작물재배를 위하여 보호구역 안에서 3년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가 유리·프라스틱등의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는 온실로서 순환식양액재배방식으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구당 3,000제곱미터이하

자. 가목 내지 아목외에 보호구역안에 거주하거나 보호구역안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농림업등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축사를 제외한다)로서 지방자치단체(특별시·직할시 및 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제4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을 사목으로 하며, 동호에

바목 및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임업협동조합·위탁영농회사·영농조합법인이 설치하는 사무실·공동구판장·하치장·창고·농기계수리소·유류취급시설(석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판매소의 시설로서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유류유출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에 한한다)

바. 종교집회장(기도원을 제외한다): 기존의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기존의 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제곱미터이하

아. 기타 당해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필요로 하는 시설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 이 경우 보호구역이 제24조 각호의 1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제6호 본문중 “범위안에서의 이전”을 “범위안에서 철거후 2년이내의 이전”으로 하고, 동호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호나목의(1)중 “철도” 다음에 “댐”을 추가한다.

다만, 철거되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의 용도가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제11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이하인 경우에는 이전규모를 동호의 규정에 의한 증축규모까지로 한다.

제12조제1호중 “공장의 용도변경”을 “공장·숙박시설·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제4호로 하되 동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축사 또는 잠실을 농산물보관창고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3. 기존주택을 연면적의 20퍼센트 범위안에서 이용원·미용원·약국·정육점 또는 노유자시설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4. 기타 건축물 및 공작물의 용도변경: 다음 각목중 각목내의 용도상호간의 변경과, 가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나목 또는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나목의 1에 정한 용도를 다목의 1에 정한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

가. 휴게음식점·종교집회장·독서실·노래연습장

나. 슈퍼마켓·일용품소매점·이용원·미용원·탁구장·당구장·체육도장·기원·사무소·금융업소·유치원·경로당·표구점·장의사

다. 마을공회당·마을공동구판장·창고(액체물질을 저장하는 창고를 제외한다)·대피소·주차장

제14조제1호 본문중 “주민이 지목상대지인 토지에서 행하는”을 “주민이 행하는”으로 하고, 동조제2호 다목중 “다과점.” 및 “.다방”을 각각 삭제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휴게음식점

(1) 환경정터구역안의 총호수의 2 퍼센트이내의 범위(기존의 휴게 및 일반음식점수를 포함한다)안에서 휴게음식점 1개소당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신축(보호구역 지정 전부터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자가 신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다목의 건축물과 복합으로 신축할 수 있으며, 휴게음식점용도의 연면적은 100제곱미터이하이어야 한다.

(2) 휴게음식점 용도의 건축물로서 기존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00제곱미터이하의 증축  
제16조중 “별표 3과”를 “별표 4와”로 한다.

제17조제1항중 “별표 4의”를 “별표 5의”로 한다.

제23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원수의 수질검사) ①법 제19조제1항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원수의 수질을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②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을 검사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질검사 기록부를 작성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는 제

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수질검사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거쳐 환경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수의 수질 검사결과는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⑤간이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 및 전용상수도설치자는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매년 다음

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사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보고받은 해의 3월 10일까지 환경처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별표 5]를 [별표 6]으로 하여 이를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표 4] 및 [별표 5]로 하며,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 유류유출방지시설기준(제23조제4호마목관련)

구분	시설기준	비고
1. 유출방지턱	<p>가. 저장시설의 최대용량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유류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유출방지턱을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유출방지턱의 높이는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정한다.</p> $H \times (A - a) \times 0.5 \times Q$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H: 유출방지턱의 높이</li> <li>○ A: 방지턱내의 바닥면적</li> <li>○ a: 방지턱내에 설치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바닥면적</li> <li>○ Q: 저장시설의 최대저장용량</li> </ul> <p>다. 방지턱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방지턱 건축물 HQ
2. 바닥처리	<p>가. 바닥은 불투수성의 견고한 재료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바닥에는 모래 또는 자갈등 흡수성이 강한 재료를 10센티미터이상 깔아야 한다.</p>	
3. 기타	<p>가. 저장시설은 지하에 설치하여야 한다.</p> <p>나. 유류공급 또는 주유등을 방지턱안에 설치할 수 있도록 유출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p>	

# 환경법

[별지 제8호서식(1)] 및 [별지 제8호서식(2)]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②(철거된 건축물등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전에 제11조제6호 각 목의 시설의 설치로 인하여 철거된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이 규칙 시행일에 철거된 것으로 본다.

③(수질검사 및 결과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27조제4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결과의 보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표 6]

원수의 수질검사기준(제23조의2제1항관련)

구 분	측정회수	측 정 함 목	측정시기	
광역 및 지방상수도	하천수, 복류수	월 1회이상	pH, BOD, SS, DO, 대장균군	
		분기 1회이상	Cd, As, CN, Hg, Pb, Cr <sup>6+</sup> ,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3월, 6월, 9월, 12월
	호소수	월 1회이상	pH, COD, SS, DO, 대장균군	
		분기 1회이상	Cd, As, CN, Hg, Pb, Cr <sup>6+</sup> ,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3월, 6월, 9월, 12월
지하수	반기 1회이상	Cd, As, CN, Hg, Pb, Cr <sup>6+</sup> ,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간이 및 전용상수도	하천수, 복류수, 계곡수등의 표류수	반기 1회이상	pH, BOD, SS, DO, 대장균군	
		2년 1회이상	Cd, As, CN, Hg, Pb, Cr <sup>6+</sup> ,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호소수	반기 1회이상	pH, BOD, SS, DO, 대장균군	
		2년 1회이상	Cd, As, CN, Hg, Pb, Cr <sup>6+</sup> , 음이온계면활성제, 유기인, PCB	
지하수	2년 1회이상	Cd, As, CN, Pb, Cr <sup>6+</sup> , Hg, 음이온계면활성제,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말라티온, 페니트로티온		

### 비고 : 1. 채수지점

- 가. 하천수, 호소수 및 계곡수등의 표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유입되기 직전의 지점에서 채수한다.
- 나. 복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1회, 착수정에서 1회를 채수하여 각각 검사한다.
- 다. 지하수의 경우에는 취수구에서 채수를 한다.

### 2. 검사방법

- 가. 불소, 세레늄,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페놀 및 지하수항목 : 음용수의 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별표 2의 음용수의 수질검사방법에 의한다.
- 나. 기타 전항목 : 수질환경보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한다.